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천준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514

발의연월일: 2024. 10. 2.

발 의 자:천준호·박홍배·민병덕

한민수・허 영・한준호

박홍근 · 김교흥 · 김영배

박상혁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강화되고 있음. 한 개 배달플랫폼에 입점한 입점업주의 수가 약 30만 명에 이르는 점이 시사하듯,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사실상 필수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일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들은 이같은 거래환경에서의 경제적 우위를 악용하여 입점업체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하고 있음.

특히 일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들이 자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타인의 재화 또는 용역 거래를 중개하면서 동시에 자기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 판매대금 정산을 지연하여 입점업체의 자금난을 초래한다는 지적 등이 있음. 일례로 최근 1조원 이상의 판매대금 미지급 사태를 초래한

티몬·위메프 사태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감독 당국의 미진한 감독을 틈타 입점업체에 정산해야 할 판매대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다 문제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행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고유한 거래관계 및 사업방식에 대한 법적 해석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의 고유한 특성에 맞는 법령을 새로 제정해야 할 필요가 제기됨.

이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사업자 간 분쟁해결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처리 및 온라 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 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중개거래계약서의 서면 발급의 무를 부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표준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도록 함(안 제7조).
- 나.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중개계약 약관을 등록하게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약관 등록이 취소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단체 구성권 부여하고, 사업자단체에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을 부여함(안 제12조).
- 라.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이용사업자에 대한 중개계약내용 변경 및 중개서비스 제한 등의 사전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 행하지 않은 중개계약의 내용 변경 및 계약해지의 효력은 부인함 (안 제13조 및 제14조).
- 마.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여 금지함(안 제15조).
- 바. 재화 등 판매대금을 구매확정일로부터 7일 또는 배송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판매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회사를 통해 관리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 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분쟁조정 신청, 신고,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자료제출,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8조).
- 아.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적으로 협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9조).

- 자.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원 협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안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 차.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 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32조).
- 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 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 비스업자는 불공정행위의 해소,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 입점업체 피해구제 및 예방 등을 위한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36조).
- 파.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서 서면교부 및 기명날인 의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보복조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업자에게 법 위반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함(안 제38 조 및 제39조).

법률 제 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중개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 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온라인 플랫폼"이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 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 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 2.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제공, 소비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약 전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

- 식으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간 재화등의 거래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3.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4.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등을 제공받는 사업자를 말한다.
- 5.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등"이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및 이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광고, 결제 및 배송 지원, 고객관리 등 각종 부가 서비스를 말한다.
- 6.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거래를 말한다.
- 7. "수수료"란 명칭이나 형식과 상관없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로부터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스등을 제공받는 대가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 8. "정보공개서"란 다음 각 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 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일반 현황
 - 나.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사업 현황

다. 중개계약에 관한 조건과 제한

라.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등에 관한 세부 항목 및 내용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설립 당시의 준거 법률에 관계없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 재화등의 거래의 개시를 알선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 대하여 적용하다.

- 1.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등을 통한 매출액(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이 1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2.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하여 판매가 이루어진 재화등의 판매가액 합계액(이하 "중개거 래금액"이라 한다)이 1천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중개거래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② 제15조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다.

- ③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1.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구조
- 2. 소비자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 양태 및 이용 집중도
- 3.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 4.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에 대한 거래의존도
- 5. 중개의 대상이 되는 재화등의 특성
- 6. 그 밖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제3항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 제5조(신의성실의 원칙)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는 각자의 거래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준수사항)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 1. 유사한 온라인 플랫폼 간 기능의 호환 · 연계 등 상호협력
 - 2.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개계약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개선을 위한 노력
 - 3.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
- 제7조(계약서의 작성 및 기재사항 등)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 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되려는 자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계약(이하 "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1.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등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이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
 - 2. 중개계약 기간, 계약 갱신 및 계약 내용 변경 시 절차, 계약해지

사유 및 절차

- 3.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등의 개시, 제한, 정지의 기준 및 절차
- 4. 판매하는 재화등의 반품, 환불, 교환 등의 절차 및 기준
- 5. 재화등 판매대금의 정산 방식 및 정산대금 지급 절차, 방식, 시기
- 6.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다른 온라인 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7.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재화등의 판매가격, 판매방식, 판매 량, 배송방식, 결제방식 등 결정에 관한 관여 또는 제한 여부 및 그 내용
- 8. 할인쿠폰 발행 등 판매촉진행사 실시 기준, 절차,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 9.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분담 기준
- 10.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의 정보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방식 및 노출 순서의 결정 기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지불하는 수수료가 노출 방식 및 순서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다)
- 11.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판매하거나 자신의 계열회사 또는 자신이 영업활동을 통제하는 회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재화등과 다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을 다르게 취급하는지 여부 및 그 내용과 기준
- 12.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및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

- 는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공 가능한 정보의 범위, 제공 방식 및 조건
- 13.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여 하거나 특정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내용
- 14. 그 밖에 중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계약서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각각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간 불공정한 중개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서 표준이 되는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수 있다.
- 제8조(약관의 등록)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되려는 자와 중개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약관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 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 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약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공정거래위원 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약관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되려는 자와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등록한 약관을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약관의 등록, 변경등록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약관 등록의 거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제8 조에 따른 약관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1.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 2.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②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약관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 제10조(약관 등록의 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약관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관이 등록된 경우
- 2.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폐업 신고를 한 경우
- 4.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약관 등록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②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약관 등록이 취소된 온라인 플 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약관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약관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중개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
- 제11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 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중개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로만 구성된 사업자단체는 그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 대하여 중개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업자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사업자단체가

- 협의를 요청할 경우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다수의 온라 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사업자단체는 온라인 플랫폼 중 개사업자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 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중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중개계약내용 변경의 사전통지)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최소 15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중개계약의 변경은 그 효력이 없다.
- 제14조(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제한 등의 사전통지) ① 온라인 플 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중개계약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최소 7일 이전에, 중개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이전

-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그 내용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 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중개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 ③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의 중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5년간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관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1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있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중개서비스등에 대한 이용거절 및 제한 행위
 - 2.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재화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3.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4.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전가하는 행위

- 5.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 6. 수수료·광고비 수취, 판촉행사 실시 등에 있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차별하는 행위
- 7.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자신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정보 제공 요청 시 이를 거절하는 행위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온라인 플 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 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② 제1항 각 호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재화등 판매대금의 지급 기한)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 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해당 재화등의 판매대금을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의 구매확정일로부터 7일 또는 배송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판매대금을 구매확정일로부터 7일 또는 배송완료일로부터 1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매대금 및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판매대금의 보호)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판매대금(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제공한 재화등을 판매한 대가로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에게 수취한 금액으로서 환급, 수수료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유하여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 1. 신탁
- 2. 예치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
- ②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등은 별도관리하지 아니하는 판매대금과 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한 판매대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판매대금을 별도관리하는 관리기관과 제2항에 따라 판매대금을 직접 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판매대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 ④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등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판매대금이 판매된 재화등을 제공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판매대금을 상계 또는 압

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등은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판매대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관리기관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판매대금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청구 방법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
-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에 대한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⑧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등을 포함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⑨ 관리기관은 그 관리기관이 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판매대금을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등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판매대금을 제1항에 따라 다른 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시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 ① 판매대금을 별도관리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등은 관리기관이 제7항에 따라 판매대금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1.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2.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화등의 판매대금 에 관한 정보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정보로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청구에 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정보
- ① 판매대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등이 판매대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② 금융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등의 판매대금 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별도관리하여야 하는 판매대금의 범위 및 산정방법,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 판매대금 관리 상황 점검 방식, 판매대금의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보복조치의 금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중개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 또는 중개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제25조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 대한 분쟁조정의 신청
 - 2.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에 따른 공정 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 3. 제32조에 따른 서면실태조사에 응하여 자료 제출 등의 방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조
- 제19조(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협약 체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

폼 이용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이행을 독 려하기 위하여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체결절차·이행실 적 평가 및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장 분쟁의 조정 등

- 제20조(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 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이하 "조정원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시·도지사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협의회(이하 "시·도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③ 조정원 협의회와 시·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분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한다.
 - ④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은 조정원의 장이 추천한 사람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시·도 협의회의 위원은 조정원의 장이

추천한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도 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1.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 또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 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판사·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3.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4. 그 밖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 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시·도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 표하는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⑥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⑦ 협의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4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 간으로 한다.
- 제21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 제한) ① 위촉일 현재 온라인 플

랫폼 중개서비스업자 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임직원으로 있는 사람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및 시·도지사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이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임직원인 경우 또는 임직원이 된 경우에는 즉 시 해촉하여야 한다.
- 제22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전체회의"라 한다)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명,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1명,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1명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소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 ② 전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회의가 전체회의에서 처리하 도록 결정한 사항
 - 2. 협의회 내부 규칙의 제정 · 개정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어 위원장이 전체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소회의는 제2항 각 호 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④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소회의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

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회의의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 도지사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제2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조정사항의 분쟁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 위원이 해당 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 였던 경우
 -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분쟁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 또는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해당 조정사항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및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② 위원에게 조정을 공정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는 서면으로 협의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제2항의 방식에 어긋나거나 조정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기피신청 을 각하한다.
- ④ 제2항의 기피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해당 위원을 조정에서 제외한다.
- 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해당 조정사항의 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24조(협의회의 조정사항)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뢰하거나 분 쟁당사자가 신청하는 사항으로서 제6조부터 제18조까지와 관련한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 제25조(조정의 신청 등) ① 분쟁당사자는 제24조의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이하 "분쟁조정 신청서"라 한다)을 협의회에 제출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와 관련한 분쟁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협의회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 ③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받거나 제2항에 따라 조정을 의뢰받은 때에는 즉시 그 조정신청 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

- 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4항의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가 최초의 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 ⑥ 제4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1. 분쟁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 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 제26조(협의회의 관할) 분쟁당사자가 서로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여러 협의회에 중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중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선택한 협의회 에서 이를 관할한다.
 - 1. 조정원 협의회
 - 2.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협의 회
 - 3.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협의회
- 제27조(조정 등) ①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제시할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해당 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 당사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1.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 2.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제24조의 조정사항이 아닌 사안에 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 3.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31조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다만,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은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 차를 종료할 수 있다.
- 1.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절차 진행 중에 조정을 거부한 경우
- 2. 조정의 신청 후에 분쟁당사자가 「중재법」에 따라 중재신청을 한 경우
- 3. 그 밖에 조정을 하여야 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 1.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조정에 합의하여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 2.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하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 3.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정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60일(분쟁당사자 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로 한다)이 지나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 ⑥ 협의회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에 조정의 경위,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 유 등을 관계 서류와 함께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분 쟁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제34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제31조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협의회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 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 ②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사항을

-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 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4 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제29조(소송과의 관계) ①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은 조정 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 ③ 협의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협의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 제30조(협의회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부터 제29조까지 외에 협의회의 조직·운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4장 사건처리절차 등

- 제3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 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 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그 근거, 내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 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의결서를 작 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결서 정본을 송부한다.
 - ⑤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된 사실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처분대상의 제한 기간을

경과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신고된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로 조치한 경우 또는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2조(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 방법,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④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 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 제33조(처분대상의 제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 가 끝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

- 의 판결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기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41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5조에 따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그당사자 및 동일한 사건으로 심의를 받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진행이 정지되고 그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 제34조(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5항, 제15조제1항, 제18조를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법 위반 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35조(시정권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방안을 마 련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 플랫폼 중 개서비스업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명령을 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그 권고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공정거래위 원회에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그

권고를 수락하였을 때에는 제3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36조(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온라 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당 해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내용 등의 자발적 해소,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 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 하여야 한다.
 - 1. 제46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2.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공정한 거래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 3.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 정명령,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 2. 공정한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 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거나, 관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 1. 해당 행위의 개요

- 2. 관련 법령 조항
- 3. 시정방안(제3항 후단에 따라 시정방안이 수정된 경우에는 그 수 정된 시정방안을 말한다)
- 4.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돕는 그밖의 정보. 다만, 사업상 또는 사생활의 비밀 보호나 그 밖에 공익상 공개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 ⑦ 이 밖에 동의의결의 절차, 취소 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4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 제37조(이행강제금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수 있다.
 -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 및 환급 등에 대하여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제38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1항, 제18조를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위반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법원은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2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제2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나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⑤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⑥ 법원은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⑦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를 준용한다.
- 제40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1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9조까지 및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를 준용한다.
 - ②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조사·의견청취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를 준용

한다.

- ③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정명령의 집행정지,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하다.
- ④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및 공무원 또는 협의회에서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준용한다.
- 제42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1. 제19조에 따른 협약 체결 지원
 - 2. 제31조에 따른 신고에 의한 법 위반행위의 조사
 - 3. 제32조에 따른 서면실태조사
 - 4. 제4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제5장 벌칙

- 제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8조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 2. 제3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② 제4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을 거짓으로 한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4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그 비밀을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제45조(과태료)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4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 제32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 3.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
- 4. 제4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 5. 제4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 6. 제8조에 따른 약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7.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비스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 8.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②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나 그 밖의이해관계인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같은항 제2호·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같은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41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66조를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제46조(고발) ① 제43조제1항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3조제1항의 죄 중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 ③ 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서의 작성 및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중개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약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이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8조제1항에 따라 약관을 등록하여야한다.